

전자무역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에 따른 관련 법규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vision of Laws According to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on e-Trade

이호건(Ho-gun Lee)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IV. 전자무역 관련 법규의 개정 체계 |
| II. 전자무역 절차의 분석 | V. 결론 |
| III. 무역업무 절차별 문제점 분석 | 참고문헌 |

Abstract

As one of the 31 e-Government project, BPR/ISP on e-Trade has been carried out during December 2003 and June 2004. The purpose of the project was designed to facilitate e-Trade by establishing Single Window for e-Trade. Elimination of legal obstacles is a condition precedent for activation of e-Trade. Thus this article is focused to present the way to revised the laws relating to e-Trade.

Key Words: e-Trade, Trade BPR/ISP, e-Trade Law

I. 서론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31개 전자정부 과제를 설정하고 긴급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003년 11월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전자무역, 물류, G4B 등에 대한 BPR/ISP를 시작하였다. 전자무역 분야는 전자무역은 31대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써 2003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무역업무 프로세스의 현황분석 및 미래모형 설계를 바탕으로 앞으

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가 완료되었다.

전자무역은 국내 Supply Chain 상의 업체 및 무역절차상의 유관기관간의 업무연계는 물론 해외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에 의해 끊김 없는 업무연계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무역과 관련된 법규는 대외무역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관세법, 외국환거래법만이 아니라 전자문서의 유통과 관련하여 상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어음법 등 제반 법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무역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대해 한정된 미시적, 부분적 제·개정으로 인하여 법규간의 유기적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관성 있는 법규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전자정부의 구현¹⁾ 및 전자유가증권²⁾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계약에 관련하여 국제회의에 참가하며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³⁾ 특히 무역학계에서는 전자계약, 전자유가증권, 전자결제 및 전자무역 관련 법규 등에 대해 꾸준히 다수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전자무역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자무역의 실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취약하며 또한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들이 일관성 있는 전자무역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법규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표 1> 정부 부처별 전자무역 관련 추진 현황

구분	추진현황	구분	추진현황
산업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자동화법 제정(1991)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정(1999) · 전자무역확산시책수립·추진(2001~) · 사이버수출상담회 개최(2002.5~) 	행정 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사업 추진(1998~) · 지자체별 중소기업 수출마케팅지원사업 추진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통관업무 정보화(1992~) · 초일류세관 60대 과제 추진(2003~)
정보 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서명법 제정(1999) 및 전자인증 총괄 · APEC 국제B2B상호연계시범사업(2002~) · 국가물류정보체계혁신사업 추진(2003~) 	건설 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물류정보망 구축(1997~) · 화물운송정보서비스 운영(1998~) · 물류거점시설 정보화(2003~)
문화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2002) · 문화컨텐츠 해외 진출 지원 	해양 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운영정보망(PORT-MIS) (1992~)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 (2003~)

자료 : 삼성SDS 컨소시엄, 「무역업무프로세스혁신(BPR/ISP)사업 완료보고서」, 2004.6, p.2.2.2.9.

1) 김민호,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10. ; 현대호, 「전자거래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11.
 2) 한국법제연구원,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I) - 전자유가증권을 중심으로」, 2002.5.16. (전자유가증권의 법적 문제점(정경영), B2B에 있어서 기업간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현황과 과제(손희성),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과제(최승열)).
 3) 왕상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계약협약 제정을 위한 제40차 실무그룹회의의 참가 결과 보고」, 법무부, 2002.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무역 BPR/ISP 사업의 결과물, 기존 전자무역과 관련한 각종 연구논문 및 자료 조사 분석, 전자무역촉진 3개년 계획의 17대 과제, BPR/ISP에서 제시된 21개 과제를 통합 분석하여 향후 법적 개정을 위한 방향성을 정립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자무역 BPR/ISP의 사업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프로세스의 조사분석, 2차에 걸친 워크샵, Focus Meeting, 자문위원회, 중간보고회, 최종 보고회, 공청회 등에 참여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II. 전자무역 절차의 분석

1. 현행 무역 단계별 점검 포인트

무역절차의 단계별 구분은 크게는 계약이전 단계와 계약이후의 계약이행단계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무역 BPR/ISP⁵⁾에서는 무역절차를 수출절차와 수입절차를 각각 5개의 Main Process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총 40개의 Sub Process로 분류한 후 다시 각 Sub Process를 118개의 Unit Process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정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 무역업무 프로세스 리스트

- 전자무역 수출 프로세스

4) 본 사업은 전자정부 사업 중 전자무역의 구현을 위한 무역업무 재설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전략을 위한 사업으로써 삼성SDS, 베어링포인트, 텔렉처 3사의 컨소시엄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2004년 8월 현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수행할 본 사업을 준비중이다.

5) BPR은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의 약자이며 ISP는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약자로 바람직한 미래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의 재설계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무역 수입 프로세스

자료 : 삼성SDS 컨소시엄, 「무역업무프로세스혁신(BPR/ISP)사업 완료보고서」, 2004.6, p.3.2.3.

2. 전자무역 관련 법규

기존에는 무역은 국내거래와 구분되는 국제거래로서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을 기본법으로 하며 기타 관련 법들은 국내 무역절차와 연계하여 독립된 규정에 의하여 운영이 되어 도 실질적인 무역절차의 연결성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자무역은 문서의 제출, 확인 및 유통이 온라인 또는 전용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반면 그 대신 각 기관간의 전자문서의 작성, 제출, 인증, 유통 등의 제반 과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각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자무역 관련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 전자문서 및 콘텐츠의 호환성 제고,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가 전자무역과 관련된 법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무역과 직접 연관된 법으로는 대외무역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대외무역법은 무역의 기본법으로써 전자무역의 정의, 개념,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 전자무역촉진시책의 수립,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 및 해제,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⁶⁾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은 전자문서의 표준화, 무역업무자동화, 무역업무자동화 사업자의 지정 등이 규정⁷⁾되어 있다.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은 전자무역, 무역전시, 무역관련 조사, 무역정보의 유통 및

6)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9조의3(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제9조의4(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5(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의 취소), 제21조의2(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7)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은 제7장 26조 (29조 중 3개 조항 삭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전자무역촉진법으로 전문개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무역인력 양성 등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전자무역 기반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무역의 운영과 관련된 법으로는 상법, 전자문서의 인증 및 공인인증과 관련된 ‘전자서명법’,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정의한 ‘전자거래기본법’, 안전한 정보의 유통 및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무역업무자동화사업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법’, 전자문서를 이용한 행정업무 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위한 상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표 2> 참조)

<표 2> 전자무역 관련 법규 및 주요 내용

법령명	전자무역관련 주요 내용	소관부처
대외무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무역 기본개념 전자무역 중개기관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산자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화업무 범위 지정 지정사업자 전자문서의 표준화 	산자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무역 거래 확산 및 지원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산자부
전자서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정통부
전자거래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문서의 정의, 효력 	산자부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하증권, 보험증권의 권리 및 의무 	법무부
외국환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ta의 위조 변조 및 개인정보 보호 무역정보의 보안 	정통부
전기통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에 대한 기본자격 	정통부
관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주 및 관세사에 의한 수출입신고 	재경부
무역금융 취급세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신용장, 환어음 	한국은행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의 규정. 전자정부의 구현 사업 촉진 및 행정기관의 생산성 제고 	행자부
전자문서의이용촉진을위한 상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문서의 제출 통지 보존 등의 의무를 규정한 개별법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전자문서의 사용 활성화.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 및 디지털 사회 구축 	산자부 (입법예고중)

자료: 저자작성.

8)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은 전자무역을 위한 제반 기반조성에 관한 규정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제6조(전자무역 거래기반의 확충),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촉진),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에 전자무역과 관련된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다.

3. 무역업무 프로세스별 법적 해결과제

무역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BPR/ISP에서는 AS-IS 분석을 토대로 주요이슈와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분야별 미래모형을 설정하여 이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의 재정의 및 시스템 구축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계된 미래 모형을 실현하기에는 몇 가지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전자무역을 도입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현행 법규가 미래의 전자무역 모델을 구현하는데 장애가 되어 기존 법규를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전자무역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활성화와 전자무역의 확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업무 프로세스혁신(BPR/ISP)사업(이하 '무역 BPR/ISP'라 함)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법제도적 해결과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그림 1> As-Is 수출 프로세스

자료 : 삼성SDS 컨소시엄, 「전자무역 BPR/ISP 공청회 자료집」, 2004.5.19, p.16.

현행 수출 프로세스를 분석한 결과 신뢰성 높은 해외시장정보의 확보, 국내 무역부대비용 결제, 전자문서의 활용, 무역결제 등에 걸쳐 많은 장애요인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수출 프로세스의 단절이 발생하는데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핵심적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핵심 문서의 전자문서화율이 저조하며 특히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환어음 등을 우선적인 전자문서 대상 문서로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 문서에 있어서도 이와 연계된 무역절차로 활용하는데 단절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적하보험, 원산지증명, 내국신용장, 선하증권 등은 문서의 신청 및 발급은 온라인으로 처리되더라도 은행업무 등을 위하여 종이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등록 저장소를 통하여 문서의 저장, 인증 및 유통시키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1>에 나타난 현재의 수출 프로세스를 <그림 2>의 To-Be 수출 Process로 개선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⁹⁾

<그림 2> To-Be 수출 프로세스

자료 : 전계서, p.17.

- ① 허가/신고 기관과 승인기관 간 프로세스 개선
- ② 네고 업무 전자화를 위한 절차 개선
- ③ 내국신용장 네고 업무 전산화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 ④ 수출 S/R, B/L문서의 연계 처리 방안 설계
- ⑤ 무역관련 전문정보 제공자 육성
- ⑥ 오피/거래선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방안 수립
- ⑦ 해외사무소의 해외시장조사/분석 전문가 확충
- ⑧ 수출지원 사업 통합 조정 조직 구성
- ⑨ 수출지원관리 체계 구축

9) 삼성SDS 컨소시엄, 「무역업무프로세스혁신(BPR/ISP)사업 공청회 자료집」, 2004.5.19, p.17.

⑩ 전자무역 중개기관 서비스 확대

현행 수입 프로세스를 분석한 결과 신용장 개설, 수입승인/요건확인, 무역결제, 통관 및 화물 인수 등에 걸쳐 많은 장애요인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수입 프로세스의 단절이 발생하는데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핵심적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3> As-Is 수입 프로세스

자료 : 전계서, p.18.

첫째는 수입승인/요건확인 절차 중 현재 13개 분야는 전자민원시스템에 의하여 온라인 처리가 되고 있으나 아직 관세청과의 연결부분이 미진하며 나머지 요건확인절차는 종이문서에 의한 업무처리가 되고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수입화물인수에 있어 인도지시서(D/O) 및 수입화물선취증명서(L/G)가 종이문서에 의하여 오프라인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e-D/O 및 e-L/G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3>에 나타난 현재의 수입 프로세스를 아래 <그림 4>의 To-Be 수입 Process로 개선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9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¹⁰⁾

10) 상계자료, p.19.

<그림 4> To-Be 수입 프로세스

자료 : 전계서, p.19.

- ① 검사/검정/인증결과 확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 ② 허가/신고기관과 승인기관간 프로세스 개선
- ③ 할당/양허 추천업무 프로세스 개선
- ④ L/G, D/O 중심의 수입관련 문서 유통 프로세스 개선
- ⑤ 요건기관 성립부터 시행, 폐지까지의 정보관리 체계 수립
- ⑥ 무역관련 전문정보 제공자 육성
- ⑦ 오피/거래선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방안 수립
- ⑧ 해외사무소의 해외시장조사/분석 전문가 확충
- ⑨ 전자무역 중개기관 서비스 확대

상기한 수출과 수입의 현행 프로세스 분석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래 모형의 구현을 위한 법규의 제정 및 개정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의해 도출된 문제점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현행 자료에 의거하여 정보수집, 마케팅 계약, 상역, 물류통관, 결제, 분쟁, 인프라 등 7개 분야로 대분류를 하고 이를 다시 22개 카테고리로 세분류하여 간단하게 문제점과 관련된 법규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무역 프로세스별 제도, 문제점 및 관련법규 표

대분류	세분류	관련 제도 및 현황	문제점	관련법규
정보수집	국내오피정보	e무역상사, Silkroad21	국내 오피 및 정보의 신뢰성, 전문성 제고 필요	대외무역법
	해외시장정보	e무역상사, Silkroad21	국내 오피 및 정보의 신뢰성, 전문성 제고 필요	
마케팅 계약	시장개척	시장개척단 운영	중앙 부처청별 중복지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등
	거래처 알선	e무역상사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제도의 시행 지체	대외무역법
	협상	사이버상담회	상설운영 중이나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활용가능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신용조사	수출보험공사 등 D&B 등 해외연계	비용 경감 필요, 화주 중심의 서비스 개선 필요	
	계약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증	전자서명 활성화 인증의 상호인정 결여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상역	신용장 개설신청	무역업무자동화 전자신용장	EDI 방식에서 웹 EDI 방식으로 전환 중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등
	무역부대비용 결제	전자환어음, 전자결제	무역부대비용 어음결제의 오프라인 단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Local 네고	전자환어음, 전자결제	전자환어음 미비 첨부서류 요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운송계약	선복신청	종이 선하증권의 발급에 따른 전자화 단절	상법
	보험계약	적하보험신청	종이 보험증권의 발급에 따른 전자화 단절	상법
	원산지 증명	온라인 신청	서울권역에 한정 운영 경기지역 확산예정	
물류통관	수출입 통관절차	EDI 신고	휴대품, 이차품 등을 제외한 전과정 전자화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
	요건확인	150여 요건확인기관을 통한 확인	일부 기관 EDI에 의한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관련 법규 및 전자서명법 등
	물품인도 지시서	e-D/O	세관의 D/O 징구폐지로 e-D/O 활용 원활 예상	상법, 관세법 등
	선적서류	e-B/L	국제적 유통을 위한 국내 법제의 정비 필요	상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결제	전자 신용장	eUCP	무역서류의 전자화와 함께 국내법제의 정비 필요	전자서명법, 외국환거래법 등
	전자결제	Bolero, Tradecard Identus.	전자문서, 환어음, 인증, 관행 등의 분석 및 대응	외국환거래법 등
분쟁	사이버 중재	ADR	ADR을 활용한 신속한 해결제도 정비 필요	대외무역법, 중재법 등
인프라	통합 플랫폼	화주 중심의 Single Window 구현 기반	통합 플랫폼의 정의와 운영주체 정의 필요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전문인력	무역연수원 및 대학	무역인력 수급불균형, 지역 및 산업전문가 부족 현장중심 전문인력 부족	대외무역법,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자료 : 이호건, "전자무역관련 현행 법체계 및 제도의 방향성 정립", 「무역업무프로세스혁신(BPR/ISP)사업 완료보고서」, 2004.6, pp.2-3.

Ⅲ. 무역업무 프로세스별 문제점 분석¹¹⁾

1. 마케팅 및 계약 부문

현재의 법제도는 주로 무역업무자동화에 집중되어 마케팅 단계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미약하다. 대기업은 무역업무자동화시스템의 이용도가 높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해외시장조사, 오피 등록 및 조회 등 정보수집과 마케팅 단계의 전자무역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케팅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인 해외시장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민간의 자율적 경쟁에 의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금번 무역업무프로세스(BPR/ISP) 혁신사업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무역전문인력의 공급이 부족하며, 이직율이 높고, 수출상품의 첨단화에 따른 산업 및 상품 전문가가 특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화주의 입장에서는 신규 거래처의 물색 및 계약체결을 위하여 산업별 전문인력과 해외시장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역 전문인력으로써 해외시장 전문가, 무역실무 전문가, 전시 전문가 및 전자무역 전문가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무역거래의 이용증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¹²⁾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행령이 미비하므로 시행령을 보완하여 법적 지원제도의 시행을 강화해야 한다.

계약은 불요식계약으로써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체결되는낙성계약이며 이러한 매매계약에 관한 법적 특성은 전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전자계약의 특성상 계약내용에 대한 증거 능력 확보, 문서의 진정성 확보, 부인봉쇄 등을 위하여 전자서명, 계약서 원본 보관 및 인증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계약과 관련하여 청약서, 매도약정서, 구매약정서, 계약서 등에 관한 정하여진 서식은 없으나 계약 내용의 재활용, 업무의 전자적 처리 등을 위하여 표준 전자문서의 개발을 통한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UNCITRAL이 1996년 5월에 제정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 제정, EU 및 OECD 등에서도 전자거래에 관한 다양한 지침들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범세계 전자상거래 기본틀 및 세계 각국의 입법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¹³⁾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¹⁴⁾ 전자무역에서는 분쟁해결 방법인 ADR

11) 삼성SDS 컨소시엄, 「무역업무프로세스혁신(BPR/ISP)사업 완료보고서」, 2004.6.24, pp.3.8.1.1-3.8.1.91.

12)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참조.

13) 윤주희, "전자거래의 입법동향과 우리의 법제개선방향", 「디지털경제시대에서의 전자거래와 법 워크샵」, 2000.4. pp. 87-125 참조.

14) 분쟁의 해결방법은 절차적 구제방법과 실체적 구제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으로 해결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ADR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방법으로써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당사자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새로운 해결방법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사이버 분쟁해결방법의 활성화를 위한 OECD 등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국내의 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 법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상역부문

상역부문 중 법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적 업무처리부문, 매매계약의 종속계약 부문 및 수출관련 국내 거래절차 부문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적 업무처리부문은 수출입승인, 원산지 증명 등이 해당하며 무역업무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수출승인, 수입승인, 수출입승인 등의 행정절차는 법제도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이를 프린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상공회의소에서 아직 한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국적 확산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유통성 증권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발행된 증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특정 국가에서 법제도적 보완과 시스템적 개발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특히 선하증권은 유통성 유가증권으로써 무역결제의 필수 선적서류, 화물의 소유권 이전, 물품의 인도청구, 환어음의 양도담보 등의 법적, 실무적 중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법으로는 선하증권, 보험증권 및 이와 관련된 증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상법과 전자문서의 인증 및 유통과 관련하여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연계시켜야 하며 UNCITRAL의 모델법 및 주요 국가의 국내법 개정 동향을 명확히 파악하여 국내 법제의 개정 또는 정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출용물품의 구매, 생산, 조달 등과 관련하여 무역부대비용의 결제 및 Local Nego의 경우는 국내거래절차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전자결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전자어음결제에 관하여 국내에서는 2004년 3월에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으나 이는 약속어음에 한정하여 적용될 것이다.

한편 환어음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을 통하여 전자환어음 제도를 도입할 예정

다는 측면에서 ADR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실제적 구제방법은 물품 및 서류의 인수거절,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특정이행, 대체품 인도청구, 감액 청구 등이 있으나 이는 절차적 해결방법에 의하여 합의 또는 법원의 강제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므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서는 제외되었다.
- 절차적 구제방법은 당사자간의 해결방법과 법 절차에 의거한 해결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법 절차에 의한 해결방법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의 발생을 위하여 상사중재원 또는 법원이 개재되어 전통적인 방법과 법절차가 적용되므로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었으나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16대 국회가 마감되는 바람에 당분간 전자환어음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무역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전자환어음 관련 법규를 제정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3. 물류·통관부문

물류통관부문은 수출입통관절차, 요건확인, 물품인도지시서의 전자화 및 선하증권의 전자화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물류 분야는 별도의 BPR/ISP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동결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부분만을 다루도록 한다.

수출입통관절차는 현재 휴대품, 우편물, 이사용 물품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과정이 EDI에 의한 문서의 접수 및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관 그 자체만으로는 수출입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으며 수입과 연관된 요건확인과 물품인도지시서(D/O)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요건확인은 150여 요건확인기관이 연계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빈도가 높은 분야부터 선정하여 2003년까지 13개 분야에 대해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요건확인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이에 따라 요건확인 및 수입통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세관에서는 D/O의 징구를 폐지하여 무역업자의 입장에서는 업무처리절차가 간소화되었다. 한편 세관에서는 D/O를 징구하지 않으나 세관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선사로부터 직접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관절차상 책임소재에 대한 다소간의 문제가 있으므로 e-D/O에 의한 확인절차의 자동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4. 결제 부문

무역결제는 특정 국가의 국내법 또는 특정 기관의 결제시스템에 의하여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 시스템, 관련 기업,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상호연계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표준화, 전자문서의 유통성, 전자문서간 호환성,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등의 운영체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결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 및 기업들이 발행하는 전자문서의 통합적 운영이 필수적이므로 전자문서의 진정성 확인, 전자서명, 인증, 인증의 상호인정 및 무역결제 관습이 중요한 변수이다. 전자결제와 관련된 기업 및 기관으로써 금융기관, 선사, 보험사, 세관 등의 유기적 네

트위킹이 전제 조건이다. 이에 따라 Bolero, Tradecard, Identrus 등의 전자결제방식이 개발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 및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상용화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국내법의 정비만으로 전자결제가 완성될 수는 없으나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의 전자결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점진적으로 무역전자결제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틀을 포용력있고 확장성있게 개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전자무역 인프라 분야

전자무역 인프라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용자 인프라 및 기간 인프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인프라이므로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사용자 인프라는 전자무역의 이용자 중심의 인프라로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 통합무역솔루션 보급사업 등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자무역 기간 인프라는 전자문서의 유통, 전자문서 원본의 보관 및 입증, 표준 전자문서의 보급을 통한 단절없는 전자무역의 실현을 위한 enabler로서의 통합 플랫폼이다. 따라서 통합플랫폼은 전자무역의 기간 인프라로써 운영형태, 운영주체, 운영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 핵심을 이루며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전자무역 기반 조성, 전자무역의 전국적 확산, TPS(Third Party Service)의 활성화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화주의 입장에서 상역과 물류통관 부문은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분야로써 BPR/ISP를 통한 전자무역 싱글 윈도우의 성공여부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주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정, 시행, 소멸에 이르는 Life Cycle에 입각한 정보의 제공과 실무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 제공 및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KMS, e-Consulting, e-Service 및 e-Learning이 통합된 형태의 사용자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IV. 전자무역 관련 법규의 개정 체계

무역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자무역에 적용되는 제반 관련 규정을 통일적인 법체계에 의하여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전자무역만이 아니라 제반 행정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은 상법, 민법 또는 별도의 특별법에 규정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

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무역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전자무역의 촉진, 전자무역 인프라의 운영 및 관리, 전자문서의 유통을 중심으로 법 개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무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진 법만을 중심으로 법규의 개정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법 개정의 기본 원칙

현재의 무역은 과거와 달리 국내거래에서 해외로 이어지는 끊김 없는 업무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무역과 연관된 국내거래의 유기적 연계 및 시스템적 구현을 지원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무역업무의 연계성 및 사용자 중심의 운영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① 전자무역과 연계된 기관이 과연 타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된 전자문서를 정식문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 ② 해당 기관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하거나 시스템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 ③ 각 기관별로 운영되는 전자문서의 표준화 및 콘텐츠의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 ④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되는 전자문서 및 각종 정보들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가.
- ⑤ 무역연관 기관이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거나 법 또는 제도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가.
- ⑥ 각 기관별로 운용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송수신되는 전자문서의 표준화, 인증, 내용증명 등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인프라를 지원할 법적 기반이 있는가.
- ⑦ 전자문서의 기능인 정보의 전달, 확인 및 유통성 확보의 세 가지 중 특히 종이문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보장되던 유가증권으로써의 유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 ⑧ 실제 사용자인 무역업체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e-Trade 허브 개념으로써의 Single Window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운영기반은 있는가.
- ⑨ 전자무역은 정부의 전부처가 연계되어 있으며 각 부처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하여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은 있는가.
- ⑩ 국가간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실무적 법적 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의 준수, 국가간 협력체제 구축, 국제협약의 채택 등을 위한 법규의 수용성은 확보되어 있는가.

현재까지 전자무역과 관련된 법규들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대외무역법,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등에 산재하여 있었으며,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분적 개

정을 함으로써 전자무역 관련 법규의 체계가 산만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적, 환경적 요소들을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전자무역 관련 규정들이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제는 국내 무역업무절차를 중심으로 하던 무역업무자동화의 틀을 벗어나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포용할 수 있는 전자무역의 중심 법규를 제정하고 관련 법규에 산재해 있던 전자무역 관련 규정들을 통일성 있게 체계화하여야 한다.

전자서명, 전자문서 표준화, 전자문서의 유통 등과 관련하여 모든 규정을 전자무역 관련법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내용은 해당 법의 조항을 원용함으로써 이 중적으로 법규를 규정하는 것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상 전자정부법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규율이 이원화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은 사무관리규정에 두어야 할 것이지만, 전자공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은 모두 전자정부법령에 규율하고¹⁵⁾ 이를 원용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요건확인과 같이 150여 기관이 연계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개정하여야 실효성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법규에 단서 조항을 통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

무역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관세청, 항만청 등 전 중앙 행정기관과 무역협회, KOTRA, 산업별 협회 및 조합 등이 연계되어 업무가 처리되는 만큼 전 중앙 행정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전자무역의 확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규정을 강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상세화하여야 한다.

특히 전자무역의 실질적 사용자인 무역업체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위한 지식관리, 전문인력 양성, e컨설팅 및 e서비스 등의 통합에 의한 사용자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담당자의 변화관리를 통한 정보 유통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법규에 국제성을 부여하고 세계적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해외동향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지원·육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무역관련 법규의 개정방안

무역관련 법규의 개정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대외무역법,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전반적인 체계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5) 김재광, 「디지털경제법계의 제문제(Ⅰ) - 전자정부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1.12, p.59.

1)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마련과 시행에 관한 대외무역법과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각기 규정된 바를 통합하여 일관된 촉진시책으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¹⁶⁾ 또한 전자무역의 인프라에 관하여 대외무역법에서는 ‘과학적 무역업무 처리기반 구축’에 관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에서는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전자무역의 인프라 조성에 관한 규정을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 규정하여야 한다.¹⁷⁾

현재의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역업무자동화 사업자 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문서의 운영기반이 전통적 EDI에서 XML에 의한 웹기반 전자문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전자문서 원본의 보관, 인증, 내용증명이 이루어지는 전자문서보관소를 포함한 전자무역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 플랫폼을 거치지는 않더라도 전자문서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관세청이나 금융기관 등과의 연계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분산처리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발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구축될 전자무역 플랫폼은 공공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 지정사업자의 의미가 상실되므로 공공인프라의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 또는 공공기관에의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무역 전자문서의 유통과 관련하여 요건확인의 예를 들면 현재 153개 요건확인기관이 연계되고 이에 따른 각종 법규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 전 법규를 일일이 수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효과성 또한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전자문서의이용촉진을위한상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입법예고중) 등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도 절차적인 규정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정보거래는 양당사자간에 약관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이러한 약관은 Shrink wrap이나 인터넷 사이트상의 약관과 같은 전자약관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 약관규제법은 Shrink wrap이나 Click wrap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약관에 관한 적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적 형태의 다양한 약관을 규율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¹⁸⁾

상기한 바와 같이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조항을 개정하여야 하며, 본 법에서는 전자무역 촉진시책의 수립, 전자무역 기반의 구축 및 운영, 전자무역

16) 대외무역법 제9조의 3,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3.

17) 대외무역법 “제18조(과학적 무역업무 처리기반 구축)”,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및 동 시행령의 관련 조문, 관세법 “제327조의2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18) 오병철, “디지털 정보거래의 의의 및 규율방안”, 「전자거래 관련 법제정비방안 전문가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1.6, p.94.

관련 전문업체의 육성 지원, 전자무역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괄하여야 하므로 전문개정 또는 신규 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법의 폐지 및 유사법의 제정보다는 전자무역의 활성화라는 측면과 개정절차상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전자무역 촉진법’ 또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2) 대외무역법의 개정

대외무역법은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5호로 제정된 이래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11호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이후 8차에 걸친 부분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총 8장 60조로 구성된 대외무역법이 삭제된 조문을 제외할 경우 현재는 총 7장 4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6개 조문은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제20조의2, 제21조의2, 제25조의2”와 같이 관련 조문에 부가된 형태를 띠고 있다.

대외무역법에는 제2조에 전자무역과 전자적무체물에 대한 정의가 있으며 제9조의3에서 제9조의5에 걸쳐 전자무역촉진시책 및 전자무역중개기관에 관한 규정이 있다. 특히 8차 개정에서는 제21조의2에 전략물자수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조항이 신설되고 현재 전략물자수출입 관리시스템의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¹⁹⁾ 본 조항도 전자무역과 관련된 것으로 앞서 제시한 ‘전자무역촉진법’(안)에서 수용하고 대외무역법에는 전략물자수출입관리 규정을 두고 해당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전자무역촉진법(안)에 연계시켜 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의 전자무역관련 조문을 ‘전자무역촉진법’(안)에서 수용하게 될 경우 대외무역법은 7장 44개 조문으로 축소될 것이다.²⁰⁾ 금번 무역 BPR/ISP를 통하여 무역절차의 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대외무역법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대외무역법의 전면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3) 무역거래기본조성에관한법률의 개정

본 법에서는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전자무역 전문인력을 포함한 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²¹⁾. 따라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무역촉진법으로 개정하게 될 경우 해당 조항이 전자무역촉진법으로 수용되어야 하며, PAA 등을 통한 국제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될 경우에도 본 법의 관련 규정²²⁾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무역거래기본조성에관한법률은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전시산업, 전자무

19)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제21조의2.

20) 전략물자수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전자무역촉진법으로 통합될 경우 43개조로 축소될 것이다.

21) 무역거래기본조성에관한법률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촉진),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22) 무역거래기본조성에관한법률 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역, 정보유통을 중심으로 한 무역거래기반조성이 주축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전자무역, 정보유통 및 국제협력 조항이 빠져나갈 경우 외형상으로는 2-3개 조문만이 축소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전시산업만이 남게 되어 법으로써의 위상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역 BPR/ISP 결과에 따라 시행령을 구체화시키고 실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1980년대 말부터 무역업무자동화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1992년에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무역 관련 법규들에 전자무역에 관한 조항이 하나씩 추가되거나 수정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래 정보통신 네트워크 및 컴퓨터 기술이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지속적으로 또한 급진적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전자무역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마다 신규 법규의 제정 및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전자무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규간에도 통일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산업자원부 이외 타 부처 법령의 경우에는 법 개정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전자무역의 현황을 반영하기도 곤란하였다. 상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무역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법의 경우는 무역의 관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3년 12월부터 시작된 전자무역 BPR/ISP를 통하여 무역절차의 온라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자무역 플랫폼을 주축으로 화주 중심의 Single Window를 구축함으로써 2007년까지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전자무역 BPR/ISP에서 도출된 결과를 구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제반 사항을 제거하고 타 법규와의 불일치 또는 상치되는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하며 동일한 취지의 중복된 조문이 생성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간 상호검토가 필요하다. (<표 4> 참조)

전자무역 BPR에 의거하여 법 개정을 할 때에는 전자문서의 유통을 위한 법규간 통일성 부여,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표준화 지원, 안정적 전자무역 플랫폼의 운영을 위한 관리 규정, 전자문서의 유통을 위한 전자문서 보관소의 설치 및 원본 전자문서 보관 기관 또는 시스템간 상호연계 및 인정 규정 체계 구축, 전자무역 기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시스템의 실질적 이용자인 중소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용자지원시스템 강화, 무역업체의 전자무역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법제도의 유기적 홍보체제, 부처간 이해관계의 조율을 위한 전자무역추진위원회에 대한 의사결정권 부여, 국제적 동향의 지속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표 4> 현재 진행중인 무역관련 법규의 제·개정 검토 현황

구분	제·개정 검토 현황
무역자동화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업무의 범위에 대한 재정의 ·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에 대한 재검토 · 전자문서의 표준화 및 효력 인정 · 전자서명의 효력 · 무역유관기관에 대한 정의
전자문서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을 포함한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해 세부적인 근거조항 마련
상법관련 조항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법적 효력 인정 및 법 개정 추진 건의 · 현행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하증권 정보를 상호 교류하여 원활한 전자무역 추진 · 전자환어음 법적 효력 인정
민사소송법 관련조항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적 분쟁 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통합공고 및 각종 고시, 요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요건확인에 관한 민원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신청서의 전자문서화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및 첨부서류의 생략, 간소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자료: 저자작성

참고문헌

- 김민호,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10.
- 김재광, 「디지털경제법제의 체문제(I) - 전자정부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1.12.
- 송희영 · 강홍중 · 이호건 · 심상렬 · 조원길 · 이상진, 「e-무역상사의 효율적 육성방안 연구」, 한국 무역학회 산업자원부 연구보고서, 2003.11.
- 심영섭, 「디지털시대에 대응한 무역정책방향」, 산업연구원, 2000.4.
- 오병철, “디지털 정보거래의 의의 및 규율방안”, 「전자거래 관련 법제정비방안 전문가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1.6.
- 왕상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계약협약 제정을 위한 제40차 실무그룹회의 참가 결과 보고”, 법무부, 2002.10.
- 윤주희, “전자거래의 입법동향과 우리의 법제개선방향”, 「디지털경제시대에서의 전자거래와 법 워크샵」, 2000.4.
- 이호건, “전자무역관련 현행 법체계 및 제도의 방향성 정립”, 「무역업무프로세스혁신(BPR/ISP)사업 완료보고서」, 2004.6.
- 최장우, “중소기업의 전자무역(e-Trade)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5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3.6.

-
- 현대호, 「전자거래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11.
-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추진위원회 워킹그룹별 2004年度 事業計劃」, 2003.12.
- 한국법제연구원,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I) - 전자유가증권을 중심으로」, 2002. 5.16.
- 산업자원부, 「21세기를 향한 중장기 무역정책비전」, 2002.11.
- 삼성SDS 컨소시엄, 「무역업무프로세스혁신(BPR/ISP)사업 공청회 자료집」, 2004.5.19.
- 삼성SDS 컨소시엄, 「무역업무프로세스혁신(BPR/ISP)사업 완료보고서」, 2004.6.24.